子心ういれいませるな



금정소식

	기 관 의 장
선	
람	

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0-4 2020. 10. 12.(월)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시	
O 하천 점용 허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43호) 2	
O 하천 점용 허가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45호) 3	
공 포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리	al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4호) 4	11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5호) 6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6호) 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7호) 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8호) 24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9호) 2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00호) 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01호) 33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02호) 3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03호) 39	
회람	

발 행 : **부산광역시 금정구** 편 집 : 문화관광과(☎519-407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43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2.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온천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정구청(도시안전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온천천 안내표지판 설치

○ 개 요 : 온천천 안내표지판 시트지 교체 및 신규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온천천 일원(남산동 893-12 외)

○ 면 적 : 11 m² (1 m² ×11개소)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45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2.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온천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정구청(도시안전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온천2호교 외 교량구조물 보수공사

○ 개 요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교량구조물 긴급 보수공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부산대역 3번 출구 하부 및 온천2호교

○ 면 적 : 976 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0. 8. ~ 2021. 1. 2. (87일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영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사전"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영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영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내에서"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영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7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보육정책 위원회,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와 보육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 2.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가족지원법」제2 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공립 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6조와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대상과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3. 관계 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

- 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제 1항에 따른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집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시설물 관리책임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시설의 보호 와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위탁 시 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다.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 어린이집 외에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 ② 수탁자가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금정구 내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은 2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 제1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규칙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수탁자가 임면한다.
 -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면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육아종합지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한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중 시설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2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조례,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장비, 이용자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해지 및 만료되면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24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센터장 등의 임면)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 ② 그 밖의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또는 수탁기관이 임면하되, 임면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면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7조(회원등록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등록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 ③ 회원은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1에 따른 등록비,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전액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50%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50%
 -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 6. 세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인정): 50%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1.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9조(지도점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5장 비용의 보조

- 제3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어린이집 냉 · 난방비
 - 2. 영유아 급식비, 간식비
 - 3. 어린이집 안전 및 방역물품 등 지원
 -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 종합지원센터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 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

다.

제33조(평가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별표1]

이용료 등의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등록비

개 인	단 체	비고
연 10,000원	연 40,000원	1.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음.

2. 이용료 및 대여료

가. 도서・장난감, 교재・교구, 탈인형

종 류	구 분	대여료 및 대여수량	비고
도서 • 장난	회원	○ 대여료: 무료○ 대여수량- 개인회원: 도 서 3권, 장난감 2점- 단체회원: 도 서 5권, 장난감 3점	○ 대여기간 : 14 일
감	비회원	○ 대여료- 도 서 : 권당 200원- 장난감 : 점당 200원~5,000원※ 대여수량 및 기간은 회원과 같음	
교재·교구, 탈인형	회원	○ 교재·교구 : 1세트당 10,000원 ○ 탈인형 : 1세트당 5,000원	○ 대여기간 : 14일○ 대여기간 : 3일

나. 놀이체험실 및 도서관 이용 : 회원 무료, 비회원 1회(1명) 당 3,000원

3. 수강료 등

구 분	금 액	비고
교육 수강	1과목당 5,000원 이하 (재료비는 별도)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
체험실 이용	1회당 5,000원 이하 (재료비는 별도)	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양육 등 발달검사	1회당 50,000원 이하	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
미술치료·언어치료·놀 이치료 등 프로그램 이용	1회당 30,000원 이하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일시보육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 에 따른 보육료 적용	

4. 시설 이용료 등

시 설 명	단 위	금 액	비고
11	주간 (09:00~18:00)	시간당 15,000원	
강당	야간 (18:00~22:00)	시간당 20,000원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
~ ~ ~ ~ ~ ~ ~ ~ ~ ~ ~ ~ ~ ~ ~ ~ ~ ~ ~ ~	주간 (09:00~18:00)	시간당 10,000원	로 계산함.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에
프로그램실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더 함
부대시설			
-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 무대조명	시간당	5,000원	
- 빔 프로젝트	1회 당	10,000원	

[별표2]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9조제4항 관련)

구 분	반 환 금 액
제19조제4항제1호 중 이용 등의 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전액
제19조제4항제1호 중 이용 등의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단, 등록비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영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 중 "대규모점포와"를 각각 "대규모점포등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해당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를 "부산상공회의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유통업무 팀장"을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담당공무원이"를 "담당자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와"를 "대규모점포등과"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각각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제10조 중 "유사한 사유로"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영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39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간이화장실 을 말한다.

2.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 중 "편의를"을 "안전과 편의를"로. "최적"을 "안전 및 최적"으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할 것"을 각각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제2조제1항을 따를 것"을 "제2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의 공간은 3mm이 하로 두어야 한다.
- 5.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벨, 안심거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 예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
-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등 이용자
- 3. 불법촬영의 피해자
-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할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

영기기 설치 여부를 직접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 중인 공중화장실등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영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0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2조의2를 제4조로 하며,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14조로 하며, 제8조를 제15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2조의2)제2항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유형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종전의 제2조의2)제5항 중 "처리계획서"를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납부증명서를"을 "납부증명서는"으로, "제작·판매"를 "제작"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1조)제4항 중 "폐기물"을 "폐기물을"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 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

제12조(종전의 제14조)제4항 중 "제2항"을 "구청장은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를 "제6조 및 제14조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구청장은 제2항"으로, "개선기간"을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를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계획서"를 "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을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영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0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계약서"를 각각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부산광역

- 시 금정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 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지에는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을 기재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명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0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 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 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 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

다.

-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③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 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 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 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 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 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 명

2020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140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 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 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 5. 금정구 소속 공무워
-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구청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